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심의 · 의결

안건번호 제2018 - 58 - 477호

안 건 명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워드디스크

의 결 일 2018. 10. 25.

주 문

1. 피심인은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에 따라 이용자가 불법음란정보를 송수신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 등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제1항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그 실시 결과(불법 음란정보 차단 필터링 적용 조치의 이행 결과 등)를 포함한 불법음란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재발방지대책(불법음란정보 차단을 위한 사업자의 자체 모니터링 운영계획 등)을 수립하여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금 액 : 10,5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라.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52조, 제53조제1항 및 제54조에 따라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

이 유

I. 기초 사실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2항 및 제22조의3제1항에 따라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저작물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이하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제2조제13호가목에 해당하는 역무를 제공하는 자')로서 2018년 1월 17일부터 피심인이 운영하는 웹사이트(withdisk.net)를 통해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II.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대상

방송통신위원회는 2018년 5~6월 전체 51개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에 따른 불법음란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피심인이 기술적 조치를 불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으로 의심되어 현장점검 대상 사업자로 선정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피심인을 대상으로 기술적 조치 의무 이행에 대해 현장점검(2018. 8. 23.) 및 사후 모니터링 점검(2018. 10. 18.)을 하였고,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사실

가. 불법음란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등) 제1항제2호의 기술적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

피심인은 2018년 5월 3일부터 방송통신위원회의 사후 모니터링 점검일(2018. 10. 18.)까지 피심인의 웹하드 사이트에 불법음란정보를 인식하여 이용자들이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할 때에 차단 기능이 작동하도록 조치하지 않아, 불법음란정보 유통을 방치한 사실이 있다.

[그림] 현장점검시 채증화면(불법음란정보의 업로드가 가능한 상태)



※ 불법음란정보 표본(방심위 DB)을 업로드해 본 결과, 업로드가 진행됨(붉은색 부분)

[그림] 사후 모니터링 점검시 채증화면(불법음란정보의 업로드가 가능한 상태)



나. **정당한 권한 없이 기술적 조치를 무력화**{「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등) 제2항의 무력화 행위}한 행위

피심인은 서비스 개시 시점인 2018년 1월 17일부터 피심인의 웹하드 사이트에 불법음란정보를 인식하여 이용자들이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할 때에 작동하는 차단 기능을 적용해 오다가 같은 해 5월 3일에 고의로 제거한 사실이 있다.

[그림] 자동 차단(필터링) 시스템 로그기록①('18. 1. 17.부터 차단 실시)

1	idx	A	B	C	D	E
		userid	mhash	filename	regdate	
2	51	aofurroal@Z	4d861bb297112e92f30d8ed1cf85b9ed687299894	76f3b42ab772b039964b36bdaa421f5f_687299894	2018-01-17 5:57	
3	52	aofurroal@Z	a6a1ea309ed1a03ca44078a402de45101440524399	87a34ad630bb8ac11670cfa0166493b7_1440524399	2018-01-17 5:58	
4	53	aofurroal@Z	88b7cc9134b94fb407aea3432ec776a8730813814	e7774821b109fd29000f7c7ad6a2b0da_730813814	2018-01-17 6:00	
5	54	aofurroal@Z	01f945dc0a7d86a1d9a63ef10ba5c2e5703922285	bddf200edfcbcd16481ec5255c3692ab_703922285	2018-01-17 6:01	
6	55	aofurroal@Z	3ee93a6edbb1d8def8d353979a40edce1501230233	8fcbcbdbce1fcd63cbab668139e4dacc_1501230233	2018-01-17 6:09	
7	56	aofurroal@Z	c13c69af7d55a84a6226340f455615b21810992290	740c4baaa5477512de22e61f1b01dd2f_1810992290	2018-01-17 6:12	
8	57	ckdvhehd97@Z	9115b1e35c174d409ef8162971fa71bf747546738	8f266050ac9f7c7dc30d420702915dd9_747546738	2018-01-17 6:13	
9	58	ckdvhehd97@Z	4d861bb297112e92f30d8ed1cf85b9ed687299894	76f3b42ab772b039964b36bdaa421f5f_687299894	2018-01-17 6:14	
10	59	aofurroal@Z	80b24333c2dca977d3706f704f6955e71014054450	f3993f7239e55f8101c7fae4d0e7b004_1814054450	2018-01-17 6:15	
11	60	ckdvhehd97@Z	88b7cc9134b94fb407aea3432ec776a8730813814	e7774821b109fd29000f7c7ad6a2b0da_730813814	2018-01-17 6:15	
12	61	ckdvhehd97@Z	01f945dc0a7d86a1d9a63ef10ba5c2e5703922285	bddf200edfcbcd16481ec5255c3692ab_703922285	2018-01-17 6:17	
13	62	ckdvhehd97@Z	76c1b4168b186ea4a2036d5ae8ca63bd1666415462	4c8578b3ba8e587fa1e05d1323211cf8_1666415462	2018-01-17 6:18	
14	63	ckdvhehd97@Z	b9fb2f943bd10416d53229edd7a4ddcd156369838d	579ff0155587f284d125f1b79c608be3_156369838d	2018-01-17 6:20	
15	64	ckdvhehd97@Z	a6a1ea309ed1a03ca44078a402de45101440524399	87a34ad630bb8ac11670cfa0166493b7_1440524399	2018-01-17 6:23	
16	65	time9305@Z	9115b1e35c174d409ef8162971fa71bf747546738	8f266050ac9f7c7dc30d420702915dd9_747546738	2018-01-17 6:23	
17	66	aofurroal@Z	f7f447e0f640f93e041dfda6f64611ba1625828497	ee428d1652bec91126583a4448e4bbb0_1625828497	2018-01-17 6:24	
18	67	aofurroal@Z	f7f447e0f640f93e041dfda6f64611ba1625828497	ee428d1652bec91126583a4448e4bbb0_1625828497	2018-01-17 6:24	
19	68	time9305@Z	4d861bb297112e92f30d8ed1cf85b9ed687299894	76f3b42ab772b039964b36bdaa421f5f_687299894	2018-01-17 6:25	
20	69	ckdvhehd97@Z	6de2dd58fbcf32229310ac0b8b229fa671780242	8aa3cdfd618d7c55d8191b396bda24dc_671780242	2018-01-17 6:25	
21	70	ckdvhehd97@Z	3ee93a6edbb1d8def8d353979a40edce1501230233	8fcbcbdbce1fcd63cbab668139e4dacc_1501230233	2018-01-17 6:26	
22	71	ckdvhehd97@Z	33b650f69035f1dee12dea5b4c0a10e81936404009	e7d42f2a42f6758211080f6e96dbb01b_1936404009	2018-01-17 6:29	
23	72	time9305@Z	196a5edf96f03caf359dda20616eb97b712129001	4ee917a0c815fbd4fda017963d4def4_712129001	2018-01-17 6:29	
24	73	time9305@Z	2889a6ee64ae1950a298668cc2e23619140866	fd6722e0d35b44afad7d7118107f8863_619140866	2018-01-17 6:31	
25	74	time9305@Z	3df3189046f8b03644c3407014625640628224181	9408039a3b636a3d3716ed902942a9e8_628224181	2018-01-17 6:32	
26	75	kk7669884@Z	85f7261d8a915f4a9345f1ab228786d3045629068	a653e80e7fdddecadb747f0ae44164f_3045629068	2018-01-17 6:33	
27	76	time9305@Z	04dda0db2ef9546baff592dd7b637e7705179657	61c4ef30ee1991081af3ba3b116bf6a6_705179657	2018-01-17 6:33	
28	77	time9305@Z	f35285adcb6132dd1474057d509eb3c671729042	b99cd8eb33da6c092d160f287c910cbe8_671729042	2018-01-17 6:34	

[그림] 자동 차단(필터링) 시스템 로그기록②('18. 5. 3. 이후의 차단기록 없음)

1	idx	A	B	C	D	E
		userid	mhash	filename	regdate	
168762	168811	sapling4@Z	53c1c00457105aa0d837cc44ad5920ad1382360037	704a43b41dcd85b1b954c1057f2c3428_1382360037	2018-05-03 10:45	
168763	168812	bae0187@Z	701a01da5a3a31dc6999aa25543f33b9548856961	9627830e53b351a793f2aa8c60e6f5d7_548856961	2018-05-03 10:45	
168764	168813	bae0187@Z	88c4c98321904344b89b1f1a2d0c4c9a1113023369	c012320923c7774399891a398f3e855c_1113023369	2018-05-03 10:46	
168765	168814	eorhdcnrjs@Z	b7777fdd615db541b7b4077cbb4533821633669738	843518e1349d49c42d5dbdfff90f6b076_1633669738	2018-05-03 10:46	
168766	168815	tydytd	ac8802b0829f7e7711d102847e8b4f482547999737	fd9fda144710f44eccb1cc373916330b_2547999737	2018-05-03 10:47	
168767	168816	bae0187@Z	feffcd03bf4dcb1d3d3ab04802a923cd41104661039	e9e42878c63442a3446ed8c8a8892a5a_1104661039	2018-05-03 10:47	
168768	168817	ehs4314@Z	6150c0ac58de21434154c31aa5d218431077043503	6269bcbce80f914024171c69b46f5dc2b_1077043503	2018-05-03 10:48	
168769	168818	bae0187@Z	85d884a8d096708c8b1db03ee12292761121105964	7ef7794bc8286e34cf77b33583c15646_1121105964	2018-05-03 10:49	
168770	168819	eorhdcnrjs@Z	69a3464bac907aa496bf1e00d034e1fc1351495641	66a69efc786398396e40318432c2fe0d_1351495641	2018-05-03 10:50	
168771	168820	bae0187@Z	dceb7d622ab0aa75ff9b2ee9d486b0fd1113683526	6bfb8e851832b66b122aa3fedf8ef1eb_1113683526	2018-05-03 10:51	
168772	168821	tydytd	0d9a6f818fb5bf1ca167d44ae85e12ea3780949164	c4cd20b4ca5dd938f2eb993e889757c9_3780949164	2018-05-03 10:51	
168773	168822	bae0187@Z	7b05eb87c9f2b6ca9676a7bb6f98282a1113984726	48fb61b19034e67e365e919a5baaaf8d_1113984726	2018-05-03 10:53	
168774	168823	eorhdcnrjs@Z	7b5371523d75c9d675d7adcb9e2e9ec501156624633	5e65268520f852592226d2a708b2eeb9_1156624633	2018-05-03 10:54	
168775	168824	bae0187@Z	53ff75c1402d2a1ef75a8a841be0f9cc1106772098	4cf2b7af166ae4bd6c4918f0c66212a_1106772098	2018-05-03 10:55	
168776	168825	bbuckcherry@Z	bc4d65f5782319bd297ef000ec3051a798670282	45f7065f13e3905b328a399fd81e9d8c_788670282	2018-05-03 10:56	
168777	168826	ehs4314@Z	2b316a84f6c5257689e6e068ab0124ef1094341464	604a8e3ab0fe477f8fad8b4a21208690_1094341464	2018-05-03 10:56	
168778	168827	bae0187@Z	c430fdddb6aad984f9cda1771183e7191123825755	b19e20a6308068ce2546a257e98cf3e7_1123825755	2018-05-03 10:57	
168779	168828	bbuckcherry@Z	edc243b019628f27344f392167d325e3798651191	613649026e1a89a6d01a509668b40d9e_798651191	2018-05-03 10:57	
168780	168829	tydytd	c490dde6b045cbbfcd8af648aff1fe933020615947	63e116d04e9a60175ebb254216732157_3020615947	2018-05-03 10:57	
168781	168830	eorhdcnrjs@Z	e4d531124cb2a364a87c0b92e0c3c70a1025758889	a849348dce0c3946284b5f11e5caeee_1025758889	2018-05-03 10:58	
168782	168831	bbuckcherry@Z	ed2268cbd8bb6405bd5fd4e50af87ae8000510658	7f62817e13846c5b92e3df27cdllbc00_800510658	2018-05-03 10:58	
168783	168832	bae0187@Z	b38bae56a77ea8ea9c0ff3dedc32067551105560489	9954778c148c9379608aa403190f91a8_1105560489	2018-05-03 10:58	
168784						
168785						
168786						
168787						

다.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수렴

방송통신위원회는 2018. 9. 4. '불법음란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위반 사업자 시정조치(안) 사전통지' 공문을 통하여 이 사건에 대한 피심인의 의견을 요청하였으나, 피심인은 의견제출기간(2018. 9. 4. ~ 9. 28.)까지 이에 대한 별도의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III.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제1항제2호는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제2조제13호가목에 해당하는 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불법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3제1항은 “법 제2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 조치’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제1호.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한 자 중 법 제2조제13호가목에 해당하는 역무를 제공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라 한다)가 정보의 제목, 특징 등을 비교하여 해당 정보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불법정보(이하 "불법음란정보"라 한다)임을 인식할 수 있는 조치

제2호. 사업자가 제1호에 따라 인식한 불법음란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정보를 이용자가 검색하거나 송수신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

제3호. 사업자가 제1호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음란정보를 인식하지 못하여 해당 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발견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이용자가 검색하거나 송수신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

제4호. 사업자가 불법음란정보 전송자에게 불법음란정보의 유통 금지 등에 관한 경고문구를 발송하는 조치”

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제2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제거·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따른 정당한 업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수사기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불법음란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등) 제1항제2호의 기술적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

피심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웹하드 사이트에 불법음란정보를 인식하여 이용자들이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할 때에 차단 기능이 작동하도록 조치하지 않은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제1항제2호(불법음란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한 것이다.

나. 정당한 권한 없이 기술적 조치를 무력화{「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등) 제2항의 무력화 행위}한 행위

피심인이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기술적 조치를 무력화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웹하드 사이트에 불법음란정보를 인식하여 이용자들이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할 때에 작동하는 차단 기능을 고의로 제거한 행위는 같은 법 제22조의3제2항(기술적 조치의 무력화 행위 금지)을 위반한 것이다.

< 피심인의 위반사항 >

사업자 명	위반내용	법령 근거		
		법률	시행령	세부 내용
(주)위드 디스크	기술적조치 미이행	§22의3① 2호	§30의3① 1, 2호	불법음란정보를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할 때에 차단 기능이 작동하도록 조치하지 않은 행위
	기술적조치 무력화	§22의3②		불법음란정보를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할 때에 작동하는 차단 기능을 고의로 제거한 행위

IV. 시정조치 명령

1. 시정명령

피심인은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불법음란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하여, 불법음란정보를 인식하고 이용자가 송수신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 등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시정명령 이행결과의 보고

피심인은 제1항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그 실시 결과(불법 음란정보 차단 필터링 적용 조치의 이행 결과 등)를 포함한 불법음란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재발방지대책(불법음란정보 차단을 위한 사업자의 자체 모니터링 운영계획 등)을 수립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3제1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104조(과태료)제3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별표 11]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6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별표 11]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이번 피심인의 위반행위가 첫 번째에 해당하여 1차 위반 과태료인 700만원을 적용한다.

<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다. 법 제2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의 운용·관리 실태를 기록·관리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4조 제3항제1호	700	1,400	2,000

나. 과태료의 가중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6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별표 11]은 ▲사업 종류 및 규모, ▲위반행위의 고의·과실 여부, 동기·내용, ▲위반의 정도 및 그 결과, ▲이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가중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웹하드 사이트에 불법음란정보를 인식하여 이용자들이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할 때에 작동하는 차단 기능을 2018년 1월 17일부터 적용해

오다가 2018년 5월 3일에 차단 기능을 고의로 제거하고 작동하도록 조치하지 않았으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위반사항의 사실확인(2018. 8. 23.)시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안내하였음에도 사후 모니터링 점검일(2018. 10. 18.)까지 시정을 위한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아, 불법음란정보가 무분별하게 유통되도록 방치하는 등 위반행위의 정도가 매우 심하다고 판단되므로 기준금액의 2분의 1인 350만원을 가중한다.

< 과태료 산출내역 >

위반조문	기준금액	가중	감경	최종 과태료
§22의3①	700만원	350만원	없음	1,050만원
계				1,050만원

다. 최종 과태료

이에 따라, 피심인의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제1항 위반에 대해 1,0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V. 결론

피심인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92조(시정명령)제1항 제1호, 제104조(과태료)제3항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 또는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8년 10월 25일

위원장 이 효 성



부위원장 허 욱



위원 김 석 진



위원 표 철 수



위원 고 삼 석

